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3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8154 취득세 등 추징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0. 9. 24.

판 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3.[1] 원고에게 한 취득세 139,663,130원, 지방교육세 11,734,020원의

1) 원고는 예비적 청구취지로 처분일을 2018. 7. 16.으로 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기재하였으나, 처분일은 2018. 7. 13.으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3

추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redacted]구 B, C동 2층 D호에서 화물운송 및 주선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2. [redacted]광역시로부터 E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redacted]구 F 토지 7,578.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다음 2015. 1. 8.경에는 2013. 9.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4. 12. 24.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그 취득가액 2,790,360,78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111,614,430원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7. 12. 28.경 원고에게 감면분 부동산 취득세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8. 4. 24.에는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2018. 5. 2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redacted]광역시장은 2018. 6. 21. 불채택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8. 7. 13.경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139,663,130원, 지방교육세 11,734,020원 합계 151,397,15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10.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태풍의 영향으로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redacted]구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이에 원고도 2017. 12. 23.까지 건물착공을 위한 유예기한을 승인 받았으며,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의 복구가 늦어지고 설계 및 구조심의 과정이 지연되어 2017. 11. 29.경에야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원고는 혹한기 공사진행을 피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는 등 사정이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3년 내에 착공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감면추징 배제요건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에게 위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겼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한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3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추징의 장애요건인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redacted]구 일대가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인근의 다른 모든 토지에는 공장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바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3

② 원고는 2017. 11. 6.경에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위한 착공 유예기한이 불과 약 1개월 남은 2017. 11. 28.경 허가를 받았고, 이후에도 2018. 6. 20.에 이르러 비로소 착공신고를 하였다.

③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현지 확인한 후 작성한 2018. 2. 27.자 복명서에는, 출장 확인일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공장 건축물 착공 등을 한 흔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그밖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3

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3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